

##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
제정 2017. 10. 17 조례 제2868호  
전부개정 2019. 3. 5 조례 제3031호(제명개정)  
일부개정 2020. 3. 2 조례 제3171호  
일부개정 2020. 7. 10 조례 제3213호(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)  
일부개정 2020. 12. 31 조례 제3270호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경기안양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0. 12. 31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12. 31>

1. “경기안양사랑상품권”(이하 “상품권”이라 한다)이란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하여 증표를 발행·판매하고,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,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,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.
2. “금융기관”이란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, 「농업협동조합법」·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·「신용협동조합법」의 협동조합, 「상호저축은행법」의 상호저축은행과 「새마을금고법」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.
3. “판매대행점”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·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.
4. 삭제 <2020. 12. 31>
5. “가맹점”이란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 
(이하 “개별가맹점”이라 한다)

나.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(이하 “환전대행가맹점”이라 한다)

6. “사용자”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
7. “운영대행사”란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전자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·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·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2장 상품권의 관리·운영

제4조(발행 및 유통)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.

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·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전자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또는 「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·판매 및 환전 업무를 안양시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,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⑥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안양시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31>

⑦ 상품권의 명칭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상품권 운영협의회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31>

[제목개정 2020. 12. 31]

제5조(판매 대행 등의 협약 및 관리) ① 판매대행점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을 하

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약 기간
  2. 판매대행점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의 의무사항
 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31]

제6조(상품권의 종류 등) ①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12. 31>

1. 종이형 상품권: 1만원권
  2. 전자상품권(카드형 및 모바일)
- ②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12. 31>

1. 발행권자
  2. 발행일 및 유효기간
  3. 유통지역
  4. 이용안내 또는 유의사항
  5.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, 2020. 12. 31>

[제목개정 2020. 12. 31]

[종전 제6조는 삭제, 제5조에서 이동 2020. 12. 31]

제7조(가맹점 등록 및 취소) ① 시장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31>

1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2. 「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
3.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안양도시공사 및 안양시 출자·출연기관, 안양

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 교통, 문화시설, 체육시설 등

4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

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개별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등록 신청을,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31>

③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(「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회에 한정한다)는 시장에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. <신설 2020. 12. 31>

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,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. <개정 2020. 12. 31>

⑤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31>

1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

2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

3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

4.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

⑥ 개별가맹점은 등록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31>

⑦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31>

1.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된 경우

2.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
3. 가맹점이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

4.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⑧ 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가맹점 정보를 삭제하고, 가맹점 및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

2020. 12. 31>

[제목개정 2020. 12. 31]

제8조(가맹점 준수사항)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 12. 31>

1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
2. 상품권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는 행위

②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 12. 31>

③ 개별가맹점의 소재지,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업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31>

④ 환전대행가맹점은 법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0. 12. 31>

제9조(판매대행점 준수사항)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·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.

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,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③ 판매대행점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0조(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) ①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유통 자료의 수집·분석·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운영대행사는 보안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운영시스템 복구와 개인정보 보

호 등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용자 준수사항)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개별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31>

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.

1.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2. 상품권이 위조·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

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발행된 상품권은 개별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. <개정 2020. 12. 31>

제12조(환전청구 및 환전) ① 개별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31>

② 판매대행점은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.

제13조(할인 및 수수료)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. 개인에게는 액면금액으로 종이상품권은 월 20만원까지, 전자상품권은 월 30만원까지 각각 할인 판매가 가능하며, 법인 및 개별가맹점 상인에게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, 2020. 12. 31>

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해당 금액의 1000분의 17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해당 금액의 1000분의 5 범위에서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31>

③ 시장은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방법과 지급률 등은 협약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2. 31>

제14조(상품권 활성화시책) ①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다.

1. 설·추석 명절 :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
2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: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

② 제1항에 따라 할인된 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액면금액으로 종이상품권은 월 20만원까지, 전자상품권은 월 30만원까지로 한다. <개정 2020. 3. 2>

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,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,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등)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31>

제16조(상품권의 폐기)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한 종이상품권을 지불처리(직인을 찍는 것 등을 말한다)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.

② 판매대행점은 종이상품권 및 그 이미지 스캔을 환전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31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판매대행점이 환전한 종이상품권의 폐기를 원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상품권 운영협의회

제17조(설치) 시장은 상품권 발행, 운영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품권 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18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상품권 업무담당 실·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31>

1. 안양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

2.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소상공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3.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
4.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19조(위원의 임기) 협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.

제2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31>

1. 본인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
2.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그 밖에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[제목개정 2020. 12. 31]

제2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2조(회의)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-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3조(간사)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, 간사는 상품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상품권 업무담당팀장이 된다.

제2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·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

제25조(수당)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 
<개정 2020. 7. 10>

제26조(운영세칙)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## 제4장 보칙

제27조(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)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.  
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제28조(유통질서 확립)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2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2019. 3. 5 조례 제3031호 전부개정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3. 2 조례 제317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7. 10 조례 제3213호,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 중 “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⑥ 부터 ⑧ 까지 생략

부칙 <2020. 12. 31 조례 제3270호>

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, 환전대행 단체, 가맹점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협약체결 및 가맹점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.